

파주 운정신도시 중흥S-클래스 2차 다자녀 특별공급 안내

■ 다자녀 특별공급 안내

대상자	
■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 포함)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-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.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함.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. -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,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 제3항)	
선정방법	
■ 당첨자 선정방법 - 경기도 거주자에게 50%, 기타 수도권(서울시, 인천시)거주자에게 50% 각각 배정하며, 경기도 청약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되, 경쟁이 있는 경우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」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. -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. -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에서 낙첨된 파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수도권에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서울, 인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, 이 경우 해당 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. 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	

■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

배점표				
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계	100			
미성년 자녀수 (1)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영유아 자녀수 (2)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
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
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
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	한부모 가족	5	
무주택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해당 시·도 거주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입주자 저축 가입기간(6)	5	10년 이상	5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
유의사항

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 ※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)
 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
 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 ※ 동점자 처리
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
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
■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증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(해당자)			
공동 서류	0		무주택서약서	본인	■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0		신분증	본인	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	0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■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「전체포함」로 발급
	0	0		배우자	■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0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「전체포함」로 발급
	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포함하여「상세」로 발급
	0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■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0		복무확인서	본인	■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	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	0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■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0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0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입양의 경우
	0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자녀	■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■ 재혼·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0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■ 신청자가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	0	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 주택	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■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■ 소형·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■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0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■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0		인감증명서	청약자	■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0		인감도장	청약자	■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0		위임장	청약자	■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0		신분증	대리인	■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.(※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)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“주민등록번호”,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 및 “주소변 동이력”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 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
 -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 ※ 본 안내문은 편집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연락 바랍니다.